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491,424,842	14,742,745
일반회계		431,313,855	12,939,416
특별회계		60,110,987	1,803,330
공	기업특별회계	30,791,670	923,750
	상수도사업 특별회계	30,791,670	923,750
71	타특별회계	29,319,317	879,580
	수질개선 특별회계	7,567,565	227,027
	주택사업 특별회계	4,791,463	143,744
	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	933,648	28,009
	자활기금 특별회계	2,070,794	62,124
	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	10,561,273	316,838
	주차장관리 특별회계	820,180	24,605
	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	173,282	5,198
	기반시설 특별회계	34,186	1,026
	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	2,366,926	71,008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채무부담행위: 해당없음
-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630,639천 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지방채 한도액은 15,500,000천 원이며,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4,742,745천 원으로 한다.
-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 - (1)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 - (2) 재무활동 경비
 - (3)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
 - (4)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